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878호
- 다. 제출일자 : 2023. 5. 30.
- 라. 회부일자 : 2023. 6. 1.

2. 제안이유

- 민생경제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법정 의무경비 정산 등을 위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입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3억 73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13억 74백만 원 대비 72.7% 증액(9억 99백만 원)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 계	1,373,718	2,372,975	999,257	72.7%
보 조 금	0	700,000	700,000	-
국고보조금 등	0	700,000	700,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0	304,257	299,257	5,985.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0	0	△5,000	-100%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0	304,257	304,257	-

나. 세출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69억 29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1,137억 19백만 원 대비 2.8% 증액 (32억 10백만 원)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 계	113,719,469	116,929,010	3,209,541	2.8%	
일 반 회 계	소 계	113,719,469	116,929,010	3,209,541	2.8%
	재무활동	5,000	304,257	2,99,257	59,85.1%
	사 업 비	113,567,631	116,477,915	2,910,284	2.6%

4. 검토의견

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1) 세입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2.7%, 9억 99백만 원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 계	1,373,718	2,372,975	999,257	72.7%
보 조 금	0	700,000	700,000	-
국고보조금 등	0	700,000	700,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0	304,257	299,257	5,985.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0	0	△5,000	-100%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0	304,257	304,257	-

- 국고보조금 7억 원 증액은 기존 전액시비로 진행 중이던 ‘청년 전월세 보증금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의 국비매칭(국비:시비=1:1) 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7억 원 확정내시를 확인함¹⁾
-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3억 4백만 원 증액건은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²⁾에 따라 국가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에 반환해야 하므로 보조금 반환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2) 세출예산안

- 2023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청년 미래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4441 (2023. 3. 30)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투자 금융지원(이차보전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8억 10백만 원,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11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 99백만 원 등 총 32억 10백만 원(2.8%)을 조정하려는 것임

○ 세출예산을 편성사유별로 살펴보면

- 증액사업 2건, 29억 10백만 원
- 국비보조금 반환 1건, 2억 99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사업개요 및 추경사유
합 계		(x700,000) 116,929,010	113,719,469	(x700,000) 3,209,541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소계	3,847,284	2,037,000	1,810,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학(원) 및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에게, 기(既) 발생한 이자액 사후 지원(년 2회, 상·하반기 6개월분) - '23.2월 고물가 고금리 시대 경제위기에 취약한 청년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용회복 추가 지원 필요(행1부 시장 주재 민생경제대책회의) - 현재 15,000명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23.4월 현재 서류심사 통과자는 18,408명으로 상반기에 현재 편성된 예산 전액 조기 집행 예상되며, 하반기에도 20,000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
	사무관리비	17,000	17,000	-	
	이차보전금	3,820,000	2,020,000	1,800,000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10,284	-	10,284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소계	(x700,000) 1,480,000	380,000	(x700,000) 1,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만 19세~39세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을 계약하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 원) 지원 - 최근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 증가로 인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조치 시행중이며,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료지원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자체시비사업은 종료하고 국비:시비 1:1 매칭을 위한 시비 추가 편성 필요
	사무관리비	80,000	80,000	-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00	300,000	△300,000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x700,000) 1,400,000	-	(x700,000) 1,400,000	
국고보조금 반환	소계	304,257	5,000	299,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종료하고 사업비를 정산함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	304,257	5,000	299,257	

나.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

(1)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별설명서 P.16 ~ 19)

-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0억 37백만 원 대비 18억 10백만 원(88.9%)을 증액한 38억 47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
-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기정예산 18억 원의 100%인 18억 원(이차보전금⁴⁾)과 서류검증 지원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백만 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총 18억 10백만 원을 증액하기 위함임

<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 세부 산출 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기간제근로자 보수 2,571,000원*2명*2개월 = 10,284 천 원
	증감사유 :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서류검증 지원 인력 인건비
이 차 보 전 금	○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등 120,000원*15,000명 = 1,800,000 천 원
	증감사유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15천명→30천명)

3) <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세부사업 >

사업명	사업내용	2023 예산내역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로서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중 또는 졸업한 지 5년 이내의 서울시 거주자에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	1,800,000,000 원 (120,000원*15,000명)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로서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중 또는 졸업한 지 5년 이내의 서울시 거주자에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	100,000,000 원 (500,000원*200명)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청년층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	120,000,000 원 (10,000,000*12개월)

- 4) 이차보전금 :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

〈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 청년에게 금융지원 및 부채경감 지원을 통해 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근거

- 청년기본법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2.1.)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12.1.)
-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우리은행 협약체결(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12.4.)
- 조례 개정(재학생, 휴학생 대상 → 졸업 2년 이내 포함) (‘17. 5.)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66개 분야별 공약중 9개 대표 공약) (‘18.)
- 졸업 후 2년 이내 → 5년 이내로 대상자 확대(‘19.5.)
- 대학 재학·졸업생 →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재학·졸업생으로 확대 (‘20.10.)
-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우리은행 협약체결(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21.8.)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로서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중 또는 졸업한 지 5년 이내의 서울시 거주자 / 서울시 거주 만19~39세 이하,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 서울시 거주중인 만19~39세 미만인 신용회복지원자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 사업의 주요내용 :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 2023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847,284	
계획수립	2023.01~2023.01		
신청접수	2023.01~2023.03		제1회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접수
신청접수	2023.01~2023.12		학자금대출신용회복지원사업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신청접수
지원비 지급	2022.06.	1,910,000	상반기 지원 완료
신청접수	2023.07~2023.09		제2회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접수
지원비 지급	2023.12.	1,910,000	하반기 지원 완료
홍보 및 위원회운영	2023.01~2023.12	27,284	사업 홍보 및 위원회 수당지급 등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12.1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⁵⁾으로 지원범위가 4번에 걸쳐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 상한도 높이고 인원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 변화에 취약한 청년 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금융지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2020년 이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제1회 이자지원 사업⁶⁾에는 신청이 급증하여 18,408명이 지원, 2022년 전체 신청자 19,534명에 상당함을 알 수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신청자 증가 추세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의 이자 면제 시행⁷⁾으로('22.1.1.) 지원 규모의 약 14% 정도가 감소 될 것이라는 한국장학재단의 추계를 근거로 2023년 예산을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는바,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사업계획수립과 정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또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와의 지원 규모의 차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의 민원 제기 등은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과 종합적이고 입체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추계 및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변경 내용

'13년 휴학생 추가 → '17년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추가 → '19년 졸업 후 5년 이내 확대 → '20년 대학원생 추가

6) 2023년 제1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2022년 하반기(7~12월) 학자금대출 발생이자 지원
- 접수기간 : '23. 1. 18. ~ 3. 6.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현황 >

연도	예산총액 (천원)	신청자 수	선정(지원)자 수	비고
2020	1,260,000 ▷ 90,000원*14,000원	12,552 명	11,750 명 (93.6%)	
2021	1,425,000 ▷ 100,000원*14,250명	15,341 명	13,237 명 (86.3%)	*대학원생추가
2022	1,500,000 ▷ 100,000원*15,000명	19,534 명	16,213 명 (83.0%)	
2023 (제1회)	1,800,000 ▷ 120,000원*15000명	18,408 명	16,874 명 (91.7%)	*서류심사완료 *심의위원회 확정 前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비교 >

비 고 (22년도 기준)	서울시	경기도
대출 인원	327,029명	455,893명
신청 인원	19,534명	49,248명
지원 인원	16,213명	49,248명
예산 규모	1,765백만원	4,207백만원
지원 비율	5 % (대출인원 대비) / 83 % (신청인원 대비)	11 % (대출인원 대비) / 100 % (신청인원 대비)

※ 미래청년기획단 제출 자료

-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다자녀 가족' 기준 변경(자녀 수 3명 → 2명)⁸⁾에 따라 본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신청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의 경우 소득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발생이자 전액이 지원되는데⁹⁾,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를 개정하여 입법예고 하였음

8)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2023.5.16.)

9)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④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의 경우 소득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지원대상이 된다.

< 다자녀 가구(가족)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다자녀 가구"란 본인 또는 부모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617호)

- 입법예고기간 : 2023.06.08. ~ 2023.06.28.

(2)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별설명서 P.20 ~ 23)

-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보증금 반환 분쟁이 증가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가구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80백만 원 대비 11억 원(289.5%)을 증액한 14억 80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
- 이번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중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보험료지원 국비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국비와 1:1 매칭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며, 세부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기존 시비 사업을 위해 편성되었던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원은 감액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억 원을 편성하여, 총 11억 원을 증액하는 것임

<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300,000원*1,000명 = △300,000천원
	감액사유
	국비매칭 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 종료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156,000원*9,000명 = 1,400,000천원
	증액사유
	국비매칭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확보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5:5. 국비 7억원 확정내시)

<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

<p>□ 사업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인 보증금 반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된 청년가구의 전 재산과 같은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함 <p>□ 사업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본법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p>□ 추진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완료(21.12.) ○ '22년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22.5.) ○ 보증료 지원 신청접수(22.7.) ○ 선정자 발표 및 지원(22.9.)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지원대상 :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임차인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추진방법 :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 사업의 주요내용 :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및 주거금융교육 제공 <p>□ 2023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추진절차</th> <th>추진기간</th> <th>예산집행계획</th> <th>추진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1,480,000</td> <td></td> </tr> <tr> <td>보증보험료지원</td> <td>2023.01~2023.12</td> <td>1,480,000</td> <td>신청플랫폼 구축, 모집, 선정, 지급 등</td> </tr> </tbody> </table>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480,000		보증보험료지원	2023.01~2023.12	1,480,000	신청플랫폼 구축, 모집, 선정, 지급 등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480,000													
보증보험료지원	2023.01~2023.12	1,480,000	신청플랫폼 구축, 모집, 선정, 지급 등												

-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2년 서울시 자체 신규사업(예산 1억 원)으로 추진, 총 610명(857명 신청)을 선정하여 1인당 평균 163,578원을 지원하였음

- 미래청년기획단은 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원 인원 확대, 지원기준 재검토 등 사업내용을 개선하여 20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280%(2억 80백만 원) 증액한 3억 80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변경 사항 〉

과목구분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 재 원)	○ 보증보험료 지원 100,000원*1,000명 = 100,000천원	○ 보증보험료 지원 200,000원*1,500명 = 300,000천원
	증감사유	
	- 평균 보증보험료 변경(10만원 → 20만원), 지원인원 확대(1,000명 → 1,500명)	
사 무 관 리 비		○ 홍보 및 행정관리 등 = 80,000천원
	증액사유	
	- 사업 홍보 및 회의개최 등 행정관리비용	

- 국토교통부는 '22.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청년 전세보증보험료지원 지원사업'을 추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도 정부 신규 예산사업¹⁰⁾으로 편성함
- 미래청년기획단은 관련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23.3월 7억 원을 확정내시¹¹⁾ 받았으며, 세부사업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조정 중으로 상반기에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사전에 서울시 청년 주거 실태를 면밀히 살펴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방침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기존 신청·접수 방식은 온라인 채널(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자치구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방식의 추가를 요청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임

10) 소요재원 122억 원 (국비 61억 원, 지방비 61억 원)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4441 (2023. 3. 30.)

<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안) >

사업개요(안) ※ 국토부 사업계획 및 지침서 수립 중으로 추후 변동 가능

○ **추진체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국토교통부</th></tr> <tr><td>○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td></tr> </table>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서울시</th></tr> <tr><td>○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td></tr> </table>	서울시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자치구</th></tr> <tr><td>○ 신청·접수 및 심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td></tr> </table>	자치구	○ 신청·접수 및 심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서울시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자치구										
○ 신청·접수 및 심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										

○ **지원대상** : 보증보험 가입 완료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주택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사업예산** : **1,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1,400백만원, 사무관리비 80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매칭비율(5:5)에 따라 국비 700백만원, 시비 700백만원 편성

(3)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별설명서 P.24 ~ 26)

-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반환' 건은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¹²⁾ 참여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5백만 원에 2억 99백만원을 증액한 3억 4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
- 3억 4백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96백만 원과 잔액에 대한 이자 8백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23.5월 정산을 확정하였음¹³⁾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내역 >

(단위 : 천원)

선정금액	집행액	잔액	불인정액	반환결정액	사업비	
					사업비	이자
1,000,000	704,245	295,755	800	304,257	296,555	7,702

12)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행 자치단체 28개 선정(22.4.18.)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1개 / 강원도 3개 / 충청도 4개 / 전라도 3개 / 경상도 5개 / 부산, 울산지역 각 1개 등 총 28개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방식>

구직단념 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①지역의 구직단념청년을 직접 발굴·모집 → ②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1:1 상담,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1~2개월) 프로그램* 제공 → ③(이수자)는 취·창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사) 고용촉진장려금에 연계하여 진행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1371, 2023.5.2.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을 종료한 경우 국가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에 반환해야 하므로 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 반환 예정 국고보조금은 '2022년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고립청년 지원사업'에 편성되었던 것으로 1,000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자치구 자체 사업과 중복으로 추진된 점, 대상자 발굴 및 지원조건 충족이 어려웠던 점, '고립'과 '은둔'의 경계가 모호하여 은둔 청년 지원사업으로 참가자가 분산되는 등의 사유로 최종 520명을 지원하는 그쳐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은 종료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¹⁴⁾

※ 참고 1 : 고립청년 지원사업 결과 및 성과

- ▷ 신청자 접수 및 선정 : 최종 897명 선정, 520명 지원
- ▷ 프로그램 제공 : 886회, 11,165명 참여(누계, 중복참여 집계)

구분	지원대상	프로그램 참여	사업내용
중앙센터 (중부센터)	97명	1,165명	* 관계기술, 진로탐색, 취업역량, 특화 프로그램
남부센터	61명	158명	* 노동법 교육, 이미지메이킹, 템플스테이, 전시관람 등
동남센터	52명	175명	* 관계기술, 진로탐색, 취업역량, 청년생활 백서제작
동북센터	90명	497명	* 관계맺기 파티, 성향이해 프로그램, 진로탐색(강연)
북부센터	80명	327명	* 관계기술, 진로탐색, 취업역량 등
서남센터	75명	234명	* 자아탐색, 관계형성, 소그룹 활동, 종합심리검사
서북센터	65명	388명	* 스포츠본스터, 색채테라피, 퍼스널컬러티 등

※ 참고 2 : 고립청년 지원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기관	구분	지원금액	지출금액	잔액	집행률	
중앙센터 (한국생명의전화)	국비	운영비	487,800	383,912	103,888	78.7 %
		인센티브	0	0	0	-
	지방비	123,000	106,106	16,894	86.3 %	
	소계	610,800	490,018	120,782	80.2 %	
중부센터 (한국생명의전화)	국비	운영비	44,600	42,685	1,915	95.7 %
		인센티브	25,000	17,000	8,000	68.0 %
	지방비	11,000	10,993	7	99.9 %	
	소계	80,600	70,678	9,922	87.7 %	
동남센터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국비	운영비	44,600	39,911	4,689	89.5 %
		인센티브	30,000	7,600	22,400	25.3 %
	지방비	11,000	7,006	3,994	63.7 %	
	소계	85,600	54,517	31,083	63.7 %	

14) 2022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 (미래청년기획단-886, 2023.1.19.) 참고

기관	구분	지원금액	지출금액	잔액	집행률	
동북센터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국비	운영비	44,600	39,343	5,257	88.2 %
		인센티브	30,000	11,200	18,800	37.3 %
	지방비	11,000	9,433	1,567	85.8 %	
	소 계	85,600	59,976	25,624	70.1 %	
서남센터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국비	운영비	44,600	33,501	11,099	75.1 %
		인센티브	30,000	11,600	18,400	38.7 %
	지방비	11,000	6,650	4,350	60.5 %	
	소 계	85,600	51,751	33,849	60.5 %	
서북센터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국비	운영비	44,600	29,836	14,764	66.9 %
		인센티브	30,000	8,400	21,600	28.0 %
	지방비	11,000	5,638	5,362	51.3 %	
	소 계	85,600	43,874	41,726	51.3 %	
북부센터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국비	운영비	44,600	29,510	15,090	66.2 %
		인센티브	30,000	9,800	20,200	32.7 %
	지방비	11,000	9,788	1,212	89.0 %	
	소 계	85,600	49,098	36,502	57.4 %	
남부센터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국비	운영비	44,600	30,748	13,852	68.9 %
		인센티브	25,000	9,200	15,800	36.8 %
	지방비	11,000	6,314	4,686	57.4 %	
	소 계	80,600	46,262	34,338	57.4 %	
합 계			1,200,000	866,174	333,826	72.2 %
		국비 합계	1,000,000	704,246	295,754	70.4 %
		지방비 합계	200,000	161,928	38,072	81.0 %

다. 종합의견

- 2023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총 9억 99백만 원으로
 -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사업인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 지원”에 참여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7억 원 증액 편성과
 - 고용노동부 “2022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를 종료함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2억 99백만 원 증액 편성임
-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2억 10백만 원으로
 -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에 18억 10백만 원 증액
 -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에 11억 원 증액 (국비 매칭 사업)
 - ‘국고보조금 반환’ 에 2억 99백만원 임

-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국비 보조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기 위한 증액 편성과, 국비 보조 사업 참여 종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위한 증액 편성이 모두 있는 바, 국비지원 사업 참여 시 세심하고 신중한 검토 후 참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된 사업 중 2건이 불용률 30% 이상¹⁵⁾을 기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미래청년기획단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12.1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¹⁶⁾으로 지원범위가 4번에 걸쳐 확대되었고 금액과 인원 역시 증가하였음

15)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7억 50백만 원 증액, 총예산 155억 원 중 집행잔액 49억 26백만 원 (불용률 31.8%)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억 95백만 원 증액, 총예산 22억 95백만 원 중 집행잔액 11억 4백만 원 (불용률 48.1%)

1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변경 내용

'13년 휴학생 추가 → '17년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추가 → '19년 졸업 후 5년 이내 확대 → '20년 대학원생 추가